



# 전국민 의료보험

## - '89. 7. 1.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

### I. 실시배경

지난 '77년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의료보험은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실시에 이어, '89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자영자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의 신기원을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은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사회의 지평을 여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한해라 하겠다.

정부 및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련단체는 보다 완벽하고 훌륭한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모두가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 II. 사업내용

첫째,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900여만 명으로 60개 시 지역 주민 중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대상자 의료보호(부조) 대상자를 제외한 전주민으로 약2,475천 세대가 된다.

둘째,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누구나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률로 정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

세째,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시·구별로 설립되며 조합원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대표이사를 선출, 대표이사는 조합을 대표한다.

넷째, 지역보험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보험재정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다섯째, 보험료부과는 지역주민간에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소득이 외에 재산과 가족수를 기준으로 표준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겐 누진율을 적용하여 능력비율에 따른 소득재분배 및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한다.

여섯째, 의료기관이용은 의료기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신이 속한 진료권 내에서는 병원·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어느 의료기관이든 직접 진료를 받도록 한다.

### III. 결론

향후에도 의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제도임을 인식을 같이하고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연합회 홍보1과제공〉